

# 한국정보과학회 차기회장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

2008년 6월 13일 제정

2018년 6월 8일 일부개정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차기회장 선거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 선거 운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준수 의무)

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입후보 등록 시 규정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.

## 제3조(선거운동)

- ① 차기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는 개인적인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②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.

## 제4조(입후보자 홍보)

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입후보자 홍보물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각각 2회 이내로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한다.

## 제5조(후보자 홍보물 제작)

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입후보자 홍보 이메일 및 휴대 전화 문자는 입후보자가 직접 제작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 제6조(후보자 홍보물 제한)

차기회장 선거 입후보자의 홍보물은 이메일의 경우 A4 용지 기준 2매 이내, 휴대전화 문자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크기 이내이어야 한다.

## 제7조(위반시 제재)

차기회장 선거입후보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최초 1회는 주의 권고를 하고,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는 유권자에게 위반 사실을 공지한다.

## 부칙

1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8. 11.30.)부터 시행한다.